



가정통신문
(제2021-47호)

청소년 금전거래 및 도박 예방 안내

한들고등학교
2021. 07. 06.

홈페이지 <http://www.handoul.hs.kr/>

교무실 451-2915

행정실 451-4208

학부모님께

군산경찰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최근 군산지역에서 학생 간 금전거래 및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서는 학생들이 타 학생과 금전거래와 불법도박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은 부모님, 선생님이나 한들고 학교전담경찰관(010-4572-4892)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금전거래 유형

학생 간 금전거래

학생 간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리 입금

SNS를 통한 불법대출 광고를 통해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높은 이자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른바 '지각비' 등으로 불법 이득을 취하는 경우

2차 피해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폭행, 공갈, 협박 등의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로 2차 피해 발생

금전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도박유형

불법 스포츠 도박 (ex. 사설 도도 등 불법사이트 가입)

최근 접근이 용이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활용한 도박 참여

PC 활용 도박 (ex. 사다리, 홀짝 등 미니게임의 형태)

PC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미니게임의 형태로 참여

도박 관련 2차 범죄 (ex. 불법대출, 절도 등)

도박으로 인하여 금전이 필요해 학생 간 금전거래 혹은 대리 입금, 절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 도박은 불법입니다.